

	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	표준번호	교무행정 6-17-1
		제정일자	2012. 3. 1
		개정일자	2019. 1.2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59조의2에 의하여 설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이하 “전공심화과정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정명칭) 본 대학 전공심화과정의 명칭은 ‘수성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’이라 한다.

제3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59조의2를 따른다.

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제4조(수업연한)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별 수업연한은 2년제 전문학사과정 학과의 경우 2년 이상, 3년제 전문학사과정 학과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(재학연한) 전공심화과정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.

제3장 입 학

제6조(입학시기) 매 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계획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입학자격)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8조(입학지원절차) 전공심화과정 모집 시 공고에 따른다.

제9조(입학전형 및 허가) 매 학년도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하고 공고한다.

제10조(등록) 입학이 허가 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입학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.

1. 제출한 증빙서류의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입학한 자
2.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
3.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
4.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자

제4장 교육과정, 수업, 학위수여 등 학사관리

제12조(교육과정) ①전공심화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 총장이 최종 확정한다.

제13조(수업) ①학급은 40명 이하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

②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주말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, 세부운영 방법은 본 대학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수업료) 매 학기 수업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최소이수학점) ①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은 전문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전공심화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최소 10학점 이상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6조(학점인정) 전문대학 과정 이수 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2년제 학과 졸업자 : 80학점 이내
2. 3년제 학과 졸업자 : 120학점 이내

제17조(학위수여) 전공심화과정 졸업이 인정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제18조(기타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의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교명변경으로 대학명칭을 “대구산업정보대학”에서 “수성대학교”로 변경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계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15.3.1.자로 계열이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의 “계열 및 계열부장” 명칭을 삭제한다.

부 칙(2019.1.21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